승 강 기 시 설 안 전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전 부 개 정 령 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으로 통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신설하면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절차 등을 각각 정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18. 3. 27. 공포, ’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각각 마련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사람으로 정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절차(안 제12조 ~ 제14조)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하되,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부품안전성시험 및 부품공장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및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함.

나. 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절차(안 제26조 ~ 제28조)

1)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제품별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공단은 모델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하되,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시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기간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함.

3) 공단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및 승강기공장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및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함.

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46조)

1)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리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부 또는 그 건축물이나 시설물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에 상주하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2)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라.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안 제64조)

1) 기술인력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100대 이하로 하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90대 이하로 함.

2)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공동도급 방식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전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함.

3) 원격관리 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기술인력은 점검보조인력을 동반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1명당 월간 170대까지 자체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종전의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다음 각 호의 승강기부품을 다시 사용하여 새로운 승강기로 교체한 것을 말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기계대(機械臺)

나. 주행안내 레일

다. 출입문의 문틀

라.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골조 구조물

나. 승강장의 보호수단

3. 그 밖에 종전의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승강기부품

제3조(승강기의 종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사후관리계획서

4.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

5. 영 제7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서에 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의 수 및 그 소재지

4. 대표자

5.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6. 기술인력

④ 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대장)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와 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유지관리 관련 자료)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도면

2. 전기도면(전기용품에 한정한다)

3. 전기・전자부품의 목록 및 제품안내서(전기용품에 한정한다)

4. 설치 매뉴얼

5. 유지관리 매뉴얼

6. 결함이나 고장 진단 안내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제조업 또는 수업업 등록증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표 5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6.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技術圖書)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성시험(이하 “부품안전성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

로 한다.

1. 해당 제품

2.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용품

3. 그 밖에 부품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라 한다)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다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에 한정한다)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의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품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

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부품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부품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4조 각 호에 따른 설계심사, 부품안전성시험 및 부품공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수입업자가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

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변경 신청의 내용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승강기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爛然)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제16조(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적용) ① 공단·지정인증기관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부품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통보하여 부품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영 제4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승강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준

제17조(부품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8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제품이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및 별표 6 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제조·수입업자의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의 인정 등) ① 법 제12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인 제조·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부품안전성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부품안전성시험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성시험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 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일회성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공장심사 면제)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6호 및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부품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21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법 제12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제22조(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

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심사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일시

2. 심사대상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제품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⑦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제2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 통관 전

③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부품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 및 모델명

4.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공단, 지정인증기관 및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공고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2. 제품명 및 모델명

3.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처분일자 및 사유(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③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부품안전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26조(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표 5 제3호의 구분에 따른 모델별로 또는 제품(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에 한정한다)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5.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7.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성시험(이하 “승강기안전성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승강기를 시험타워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1. 해당 제품을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용품

2. 그 밖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승강기의 수입업자”라 하다)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

은 모델(다른 승강기의 수입업자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에 한정한다)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승강기의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에 공단의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승강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공단은 제26조제1항에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기간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90일
2.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품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20일

② 공단은 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승강기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승강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은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1.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설계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및 승강기공장심사

2.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승강기의 수입업자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변경

신청의 내용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강기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승강기부품·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 승강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0조(승강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의 적용) ① ① 공단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려

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단에 통보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준

제31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의 실시

2. 승강기,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32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제품별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품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제품이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및 별표 6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제조·수입업자의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의 인정 등) ① 법 제18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인 제조·수입업자

2. 국제표준화기구의 승강기에 대한 인증제도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성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승강기안전성시험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성시험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 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일회성 승강기의 승강기공장심사 면제)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6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승강

기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5조(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법 제18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3.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제36조(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승강기 정기심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일시
2. 심사대상
3. 심사자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

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공단은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에 불합격한 제품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제37조(승강기의 자체심사)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체심사의 기준에 따른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끝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자체심사 연월일 및 심사 장소
3. 자체심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자체심사 수량
5. 자체심사 결과

제38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 출고 전

2.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 통관 전

③ 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승강기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4.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39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공단 및 해당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고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제조·수입업자의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2. 제품명 및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3.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처분일자 및 사유(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인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③ 공단은 승강기안전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0조(국내외 시험기관의 결과 활용 등) ①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제1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부품안전성시험

2. 승강기안전성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험 등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활용 범위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 인정을 받은 범위로 한다.

제41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3. 부품안전인증(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 영 제20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

인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0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품안전인증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승강기안전위원회에서 부품안전인증의 시장현황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지정인증기관의 명칭
3. 지정인증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지정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및 보완명령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해당 업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체없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3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

다.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 과 시정 기간

5. 소비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제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제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44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승강기 설치검사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설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안전인증서 사본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설치검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 관리교육”이라 한다)

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라.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상주(常住)하고 있는 사람

가. 관리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 내부 또는 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

나. 육교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리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로부터 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취득
3. 승강기의 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 6개월 이상
4.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③ 피난용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르며, 이하 “피난용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통보) ①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퇴사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
3.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리주체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제4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9조(승강기관리교육)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②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 규정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제4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한다)

5.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제46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은 1일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각 2일 16시간 이내로 한다.

④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승강기관리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목 및 그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고속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속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제51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안전부품이 교체된 경우 그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3. 승강기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

②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 발송의 주체·시기 및 방법, 안전검사 신청의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승강기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을 적용한다.

1.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강기: 6개월
2.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2년

가.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덤웨이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주기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그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시기를 연기하여 안점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그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53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법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가. 비상용 엘리베이터

나. 피난용 엘리베이터

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2.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어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하되, 해당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

검사 연기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승강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5. 영 제28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각 사업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7.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승강기안전위원회에서 정기검사의 시장현황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 범위

⑤ 지정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및 보완명령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해당 업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체없이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8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0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에 법 제40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하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장의 수 및 그 소재지

4. 대표자

5. 별표 10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

6. 기술인력

④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도지사는 제58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에

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영 30조제2호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종류와 그 유지관리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10과 같다.

제62조(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표준유지관리비의 공표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공단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물가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표준유지관리비를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표 내용・공표 시기 및 표준유지관리계약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한다.

②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공동도급 방식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유지관리업자는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월간 100대 이하의 승강기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아닌 다른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가 포함된 기술자의 경우에는 월간 90대 이하의 승강기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영 제2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월간 170대 이하의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기술자는 점검보조자를 동반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할 것

제65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에서 정하는 휠체어리프트의 종류 구분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제67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

대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인 방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승강기의 소재 건물명 및 주소

2. 사고 발생 승강기의 승강기번호

3. 사고 발생 일시

4. 피해 정도

② 관리주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장 발생 승강기의 소재 건물명 및 주소

2. 고장 발생 승강기의 승강기번호

3. 고장 발생 일시

4. 고장 내용

5. 피해 내용(사람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에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와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

③ 공단은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및 법 제

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에 대하여 그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공단 소속의 사고 조사 담당자가 사고 현장에 출입하여 합동조사 등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되, 해당 사고 현장의 수사 책임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사고 조사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승강기 중 직접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승강기에 한정한다)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일부터 3일 이내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해당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다음 날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관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기 전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을 공단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관리주체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행정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에 붙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기준층 출입문

2.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3.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곳. 이 경우 휠체어리프트의 종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기준층 출입문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제5장 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교육

제70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영 제37조에 따른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등의 신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나 협회(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설계이론

2.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설치공법

4.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5.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안전인증 실무

2.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3. 설치검사 실무

4. 안전검사 실무

5.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 승강기 관련법령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기간은 가각 5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④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주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기술자의 경력 등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별 과목, 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3.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기록한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 규정
5. 영 제39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자의 인력 수급(需給)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보유 인력·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교육기관 인력·시설 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3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해당 업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체없이 교육기관 지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하며, 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단
2. 해당 안전관리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제6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75조(승강기 안전산업)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업
2.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를 하는 업
3. 승강기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및 검사를 위한 장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하는 업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산업으로 인정하는 업

제7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선정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등급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보칙

제77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현황

4.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5. 법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처분 현황

6. 법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

7. 법 제50조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처분 현황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신고 현황

9.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현황

10.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

11. 승강기가 설치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관한 현황

12.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7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공단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운행 여부

2.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운행 여부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부착 여부 및 상태

4.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 여부

5.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 여부

6.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부착 여부 및 상태

7.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의 운행 여부

8.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의 부착 여부 및 상태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단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2.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실시 상태

3.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30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합동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 등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③ 제52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을 초과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한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0조(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① 시·도지사는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 제57조에 따른 위임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협회(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영 제58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2.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직무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49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2019년 1월 1일
4. 제50조에 따른 고속 승강기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1월 1일
5. 제6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규칙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신청의 접수
2. 제14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심사 및 시험
3. 제2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의 접수
4.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심사 및 시험

제3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제52조제1호의 경우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
2. 제5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

제4조(운행정지표지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급한 운행정지 표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설계・생산・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22년 3월 27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설계·생산·설치관리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 자는 2022년 3월 28일부터 3일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도급 방식의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도급 방식의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공동도급 방식의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1.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6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2. 시행일부터 4년 이내: 제6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40퍼센트
3.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제64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퍼센트

제7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통보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제46조

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제47조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영 제37조에 따른 기술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력관리기관에 경력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0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

3.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4.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 안전인증제도의 운영

5. 승강기 설치검사·안전검사제도의 운영

6.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7.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8.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및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9. 승강기 사고 조사보고서 검토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 수립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의 총괄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2.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 총괄

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14. 승강기사업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15.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과 승강기 정기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별표 1]

승강기의 종류(제3조 관련)

1. 구조별 분류기준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

구분	승강기의 종류	구조별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전기식 엘리베이터	구동기에 의해 로프나 체인 등으로 현수되는 운반구가 수직로(路)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유압식 엘리베이터	유압잭에 의해 직접 또는 로프나 체인 등으로 현수되는 운반구가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구동기에 의해 계단형의 발판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구동기에 의해 평면형의 발판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구동기 또는 유압잭에 의해 직접 또는 로프나 체인 등으로 현수되는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구동기 또는 유압잭에 의해 직접 또는 로프나 체인 등으로 현수되는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2. 용도별 분류기준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

구분	승강기의 종류	용도별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전망용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일종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를 말한다)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주택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승강행정이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휠체어리프트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7조 관련)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종류		분류기준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승강기 부품	제조업	영 제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수입업	외국으로부터 영 제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	설계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하다)이 4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공업계 고등학교”라 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생산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설치 관리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1)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제조 설비	1) 기계가공설비 5종 이상　2) 조립설비 3) 용접설비

	시험 검사 설비	1) 강제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토크렌치 11) 소음진동측정기 12) 표면온도측정기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4) 분동 3톤 이상(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15) 시험타워(임대 또는 대여하는 시험타워를 포함한다)

나. 승강기 수입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1)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시험검사설비	1) 강제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류계 5) 전압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감속도 측정기 10) 토크렌치 11) 소음진동측정기 12) 표면온도측정기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4) 분동 3톤 이상(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	설계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인 사람 8)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생산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제조 설비	1) 기계가공설비(기계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립설비(조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용접설비(용접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험 검사 설비	1) 버니어캘리퍼스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전압전류계 4) 절연저항계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인력	책임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4)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9)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10)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1)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설비	시험 검사 설비	1) 버니어캘리퍼스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전압전류계 4) 절연저항계

비고

1.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 중 2개 이상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2.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승강기 제조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업체에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받으려는 법인이나 업체는 승강기의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별표 3]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9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구분	분류	유지관리용 부품
기계류 공 간 (기계실)	제어반	가.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비상통화장치 라. 인쇄회로기판 마. 인버터 등 전력변환장치 바. 자동구출운전장치 사.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아. 회생제동장치
	구동기	가. 구동기(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나. 기어(감속기) 다. 럽처밸브・유량제한기 라. 방진수단 마. 유압 유니트 및 그 부속품 바. 전동기 사.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도르래	가. 견인 도르래 나. 풀리
	안전장치	가. 개문출발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나. 과속조절기 다.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연계수단
운반구	카 내부	가. 등록・열림・닫힘버튼 나. 비상통화장치 다. 위치표시기 라. 소방・피난운전장치
	카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나. 카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다. 카문 안내수단 라. 카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마. 카문 잠금장치

	카 상・하부	가. 과부하감지장치 나.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다. 방진수단 라. 이동케이블 마.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바. 카 안내수단
승강로	승강로	가. 주행안내 레일 및 그 부속품 나. 과속조절기 로프 다. 위치검출장치 라. 현수장치(로프, 벨트 등) 및 그 부속품
	피트	가. 과속조절기 로프 인장장치 나. 배수장치 다. 완충기
승강장	승강장	가. 비상통화장치 나. 위치표시기 다. 소방・피난 운전장치 라. 호출버튼
	승강장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나. 승강장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다. 승강장문 안내수단(이탈방지수단을 포함한다) 라. 승강장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마. 승강장문 잠금장치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2. 에스컬레이터

구분	분류	유지관리용 부품
기계류 공 간 (기계실)	제어반	가.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인쇄회로기판 라. 인버터 등 전력변환장치 마. 자동급유장치 바.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구동기	가. 구동・종동 스프라켓 나. 구동체인 다. 기어(감속기)

		라. 과속역행방지장치 및 그 부속품 마. 전동기 바.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발판	디딤판	가. 데마케이션 나. 디딤판 및 그 부속품 다. 디딤판 체인
	난간	가. 난간 나. 난간데크 다. 외부·내부패널 라. 스커트 가드 마. 스커트 디플렉터 바. 손잡이 사. 손잡이 구동장치
승강로	승강로	가. 릴레이·스위치·전자접촉기 나. 배수수단 및 그 부속품 다. 정화시설 및 그 부속품
승강장	승강장	가. 자동 재-기동수단 및 그 부속품 나. 손잡이 인입구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다. 콤 라. 콤 플레이트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비고 제1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의 유지관리용 부품은 해당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4]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또는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6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비고 다목 2)에 따른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함

[별표 5]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구분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정의

가. “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나. “기본모델”이란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말한다.

다. “파생모델”이란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분류별 모델구분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분류별 모델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	1) 개문발차 방지수단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2) 과속조절기	○ 종류 ○ 정격속도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전동기 용량 ○ 기어비 ○ 견인도르래 직경
	4) 럽처밸브(유량제한기를 포함한다)	○ 종류 ○ 밸브크기
	5) 비상통화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연결 국수
	6) 상승과속방지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7) 완충기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8) 이동케이블	○ 종류 ○ 정격전압 ○ 선심수/두께 ○ 케이블 구조

	9) 제어반(전자부품이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을 포함한 안전회로로 한정한다)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인버터 용량 ○ 인쇄회로기판 구성
	10) 추락방지안전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11) 출입문 잠금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12) 출입문 조립체	○ 종류 ○ 개폐방식 ○ 문짝 크기 ○ 재질 ○ 방화등급
	13) 현수 수단	○ 종류 ○ 소선강도 ○ 공칭직경 ○ 소선 수 ○ 재질
나.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	1) 과속역행방지장치	○ 종류 ○ 층고 ○ 적용하중 ○ 제동요소 ○ 브레이크 종류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전동기 용량 ○ 기어비 ○ 스크라켓 직경
	3) 구동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4) 디딤판	○ 종류 ○ 공칭폭
	5) 디딤판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 롤러 재질
	6) 제어반(전자부품이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을 포함한 안전회로로 한정한다)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전압 ○ 정격전류 ○ 인버터 용량 ○ 인쇄회로기판 구성

3. 승강기의 모델구분

분류		모델구분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견인능력 ○ 정격속도 ○ 운행거리 ○ 카 자중 ○ 구동기 위치 ○ 출입문 개폐구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견인능력 ○ 정격속도 ○ 운행거리 ○ 카 자중 ○ 구동기 위치 ○ 출입문 개폐구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2) 무빙워크	○ 종류 ○ 정격하중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다. 휠체어리프트	1) 전기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구동방식
	2)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구동방식
	3)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경사도 ○ 정격속도 ○ 정격하중

비고 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및 제3호에 따른 승강기 분류별 모델구분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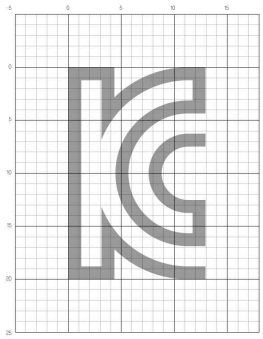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방법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항 관련)

1.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방법

가. 도안





부품안전인증번호: 승강기안전인증번호:

나. 표시 요령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등”이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또는 해당 승강기에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등의 표시방법 및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안전인증등의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5) 승강기안전부품의 표면에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6) 세부표시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방법

가.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등의 면제확인 표시는 안전인증등의 도안을 사용하고, 그 도안과 인접하여 하단에 "면제검사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제확인 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7]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한 관리주체나 승강기 이용자 등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수리·교환·환급·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부품안전인증표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4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부품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부품 안전인증 취소	-	-
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부품 안전인증 취소	-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8호	부품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2개월	부품 안전인증 취소	-
차.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9호	부품 안전인증 취소	-	-
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0호	부품 안전인증 취소	-	-
타.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0호	부품 안전인증 취소	-	-

3.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4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승강기 안전인증 표시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 금지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
타.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개선 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승강기 안전인증 취소	-	-

[별표 8]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이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법 제74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법 제77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9]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10]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61조 관련)

1. 유지관리업의 종류

가. 고속 승강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지관리업

나. 중저속 승강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지관리업

2.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가.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인력	책임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3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서 승

		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공업계 고등학교”라 한다)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3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8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 설비		1) 강제줄자 2) 테이퍼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나.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기술	책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3조 및 이 규칙 제71

인력	기술 인력	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6)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기술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3조 및 이 규칙 제71조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6명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유지관리 설비		1) 강제줄자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 버니어캘리퍼스 4) 전압계 5) 전류계 6) 절연저항계

	7) 조도계 8) 순간식 회전속도계 9) 멀티테스터 10) 감속도 측정기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 토크렌치 13) 소음진동측정기 14) 표면온도측정기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비고

1. 사무실은 해당 유지관리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의 사용권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2.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추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3.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4.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과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각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며,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유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하고,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같다.
6.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별표 11]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가)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5호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6호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7호	사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8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4개월	사업정지 6개월

비고 다목 2)에 따른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함

[별표 12]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지정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및 영 제40조 제1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및 영 제40조 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별표 13]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제7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업무정지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업무정지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2개월	4개월	6개월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다.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1)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		2개월	4개월	6개월

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3)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5)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라.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2)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구분	승강기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자본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후관리계획서 1부 4.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 1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 사항	상호(법인명)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등록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술 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주된 사무소)
   (공 장)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등록 연월일
7. 등록 구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 ] 휴업 [ ] 폐업 [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고현황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등록 구분	승강기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신고현황	구분 [ ] 휴업, [ ] 폐업, [ ] 재개	휴업·폐업 사유
	휴업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품안전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5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대리인	

부품안전 인증대상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수량
	기본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설계심사	→	부품공장심사	→	부품안전성시험 및 결재	→	부품안전인증서 작성 및 발급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부품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부품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모델구분:
(Rating)

시 험 기 준:
(Test Code)

본 부품안전인증서는	제 조 국 가 명: 제조·수입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다수 공장의 명:	의 제품에만 해당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4(2), 14(3) or 1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직인
(이 곳에 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 이 부품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부품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부품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대리인	

부품안전 인증내용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 ]파생모델 등록, [ ]부품 변경, [ ]상호 변경, [ ]주소 변경, [ ]그 밖의 변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부품안전인증서 작성	→	부품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 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확인 신청사유	[ ]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 제조자 연구개발용, [ ]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 부품안전성시험 목적용, [ ] 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의 수리·보수용,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품설명서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 의 사 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모델구분
	수량	
	사용장소	
	면제구분 [ ] 부품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부품안전성시험 [ ] 부품공장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부품안전인증, 설계심사, 부품안전성시험 또는 설계심사가 면제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부품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45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고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대리인	

부품안전 인증내용	제품명/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정격전압/전류*(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심사결과 작성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또는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대리인	
	신청 구분	[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수량
	기본모델명	정격전압/전류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5.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6.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설계심사	→	승강기공장심사	→	승강기안전성시험 및 결재	→	승강기안전인증서 작성 및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접수번호:

승강기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승강기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정격/모델구분:
(Rating)

시 험 기 준:
(Test Code)

본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제 조 국 가 명: 제조·수입업자명: 제조공장의 주소: 다수 공장의 명:	의 승강기에만 해당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8(2), 28(3) or 29(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vator Safety Control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이 곳에 기관의 영문명칭을 Full Name으로 기재합니다)

※ 이 승강기안전인증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2.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s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3.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승강기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대리인	
	신청 구분	[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내용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정격전압/전류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상호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승강기안전인증서 작성	→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량	금액
	사용장소	
면제확인 신청사유	[ ] 학교·연구소 연구개발용, [ ] 제조자 연구개발용, [ ] 전시회 또는 박람회 출품용, [ ] 승강기안전성시험 목적용, 기타(*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명서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면제확인서 작성	→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자	제조국가명	
	상호(회사명)	
면제확인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모델명
	정격전압/전류	모델구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량	
	사용장소	
	면제구분 [ ] 승강기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승강기안전성시험 [ ] 승강기공장심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공장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또는 설계심사가 면제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승강기 정기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승강기안전인증번호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대리인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내용	제품명/승강기의 종류	정격전압/전류
	기본모델명	파생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모델구분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및 결재	→	심사결과 작성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치신고 세부현황	건물명 (상호)						
	주소						
	승강기 설치 현황	승강기의 종류 (구조/용도)	층수	수량	제조·수입업체		설치일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설치신고 세부 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신
신고인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설치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	건물명(상호)				건물층수			
	승강기 소재지				설치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			
	승강기의 종류		제품명	모델명	승강기안전 인증번호	운행 층수	수 량	설치검사 희망일
	구조	용도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안전인증서 사본 1부 3. 설치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설치검사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 ] 선임 [ ] 변경 통보서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관리주체)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소재지		

승강기 안전 관리자 현황	기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자
	선임 · 변경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 또는 변경일자
		교육 수료번호	교육수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공란으로 둔 채 "선임·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변경"란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이 통보하는 경우 통보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전산등록	→	회 신
통보인		공단		공단		공단		공단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처리기간 수시검사 : (서류) 7일, (현장) 15일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 30일

신청인 (관리주체)	건물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소재지	
	안전검사의 종류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 ]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의 종류		운행	수량	제조·수입	유지관리업체		정기검사	검사
	구조	용도	층수		업체명	업체명	등록번호	도래일	희망일
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층	총 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시검사 신청 시)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강기안전부품이 교체된 경우 부품안전인증서의 사본 1부 3. 승강기의 설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 공단 또는 지검사기관은 ①란의 처리기간까지 안전검사 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까지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수시검사)	→	승인 (수시검사)	→	안전검사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공단		공단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 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관리주체)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 소재지	

연기 대상 승강기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 번호	정기검사 주기 도래일	①안전검사연기 사유코드
	구조	용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①란에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아래의 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승강기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앞쪽)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발행번호 : 제 - - - - 호

검사구분 : [ ]설치, [ ]정기, [ ]수시, [ ]정밀안전검사

건 물 명 :

소 재 지 :

승강기종류 : (설치호기:)

검 사 자 :

검사일자 : (검사주기 도래일:)

년 월 일

승강기번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인

105mm × 74mm (백상지 12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 즉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승강기 운행금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서 아래의 사유로 불합격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ID):
불합격 내용:	

년 월 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 직인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320㎜ × 220㎜
5. 종이질: 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 즉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정검사기준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각 사업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7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승강기 정기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소*(사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①유지관리 범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4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58조제2항 각 호의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유의사항

※ ①란의 유지관리 범위는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값을 적어야 하며,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의 최대 대수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소*(사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 사항	등록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법인명)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소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1. 상호(법인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주된 사무소)
   (사업소)
4. 대표자의 성명
5. 대표자의 생년월일
6. 등록 연월일
7. 등록 구분
8. 유지관리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15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소*(사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 ] 휴업 [ ] 폐업 [ ]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소*(사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유지관리업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휴업일, 폐업일 또는 사업 재개일
	등록구분 [ ] 고속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신고현황	구분 [ ] 휴업, [ ] 폐업, [ ] 재개	휴업·폐업 사유
	휴업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지관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유지관리업 등록증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신고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승강기 [ ] 중대한 사고 [ ] 중대한 고장 보고서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건물명(상호)	건물용도
	대표자 성명	승강기 안전관리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장소(설치호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일시
승강기 현황	승강기 번호(ID)	승강기 종류(구조/용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유지관리업체
	모델명(개별인증의 경우 제품명)	안전인증번호
검사 현황	설치검사 합격일	최종 검사의 종류 및 검사 대행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 결과
자체점검 현황	최종 점검일	최종 점검 결과
	자체점검자	자격 유무
사고·고장 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한 사고 여부 [ ] 중대한 사고 [ ] 중대한 사고 해당안됨 [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 [ ] 현장보존 조치 필요, [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② 사고 또는 고장 내용 및 응급조치	
	③ 사고 또는 고장의 원인 및 예방 대책	
비 고	*사고 또는 고장 내용의 설명, 그림 등 필요한 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승강기 운행정지

이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운행을 정지합니다.

상호(건물명): 승강기번호:

운행정지 기간:

운행정지 사유: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바탕: 노란색
2. 글자: 검은색
3. 사선: 붉은색
4. 크기: 320㎜ × 220㎜
5. 종이질: 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안 내]

이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 즉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승강기 기술자 경력신고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증명사진 (3.5㎝×4.5㎝)
		영문		
	소속 업체명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①학력	~			
	~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기관
②기술자격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구분	담당 업무
③경력	~			
	~			
	~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수료번호
④교육훈련 사항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경력 및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방법

1. ①란의 학력에는 승강기 · 기계 · 전기 ·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와 관련된 학력을 적습니다.
2. ②란의 기술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 기계 · 전기 · 전자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적습니다.
3. ③란의 경력에는 승강기의 설계 · 제조 · 설치 · 인증 · 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교육훈련사항은 「승강기시 안전관리법」 제53조 및 이 규칙 제70조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결과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	→	전산 등록	→	회 신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승강기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발급기관
	추가근무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구분	담당업무
		~			
		~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비고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승강기 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승강기 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번호 :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증명사진 (3.5㎝×4.5㎝)
		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체점검 가능대상	[ ] 고속엘리베이터 [ ] 중저속엘리베이터
	[ ] 에스컬레이터 [ ] 휠체어리프트

학력사항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국가기술 자격사항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기술인력구분	비고
	~			
	~			
	~			
	~			

교육훈련 사항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비고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승강기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상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기록한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승강기 교육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승강기 교육기관 [ ] 인력 [ ] 시설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상호(기관명)	지정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력·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육기관 지정서 2.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제조업 / 유지관리업) /
	주소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부서	부서명	전화번호/FAX번호
		성명	전자우편주소

기업구분	[ ] 대기업 [ ] 중소기업	업종구분	[ ] 제조업 또는 수입업 [ ] 유지관리업

기업현황	자본금 (억원)	종업원 수		기술인력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비정규직	제조	유지관리	년도	매출액(억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승강기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제 호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서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기업구분:
업종구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기업은 우수한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였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

210㎜×297㎜[백상지 150g/㎡]